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11. 27 선고 2024가단21698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광장

담당변호사 나산하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9. 11.

판결 선고2024. 11. 27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, 서울 은평구 C 도로 6㎡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
가. 2021. 9. 17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나. 위 토지를 인도하라.
-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- 제1.나항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강지현

별지